

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신청에 따른 부지급 결정 및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1. 6. 11.

중 부 지 방 고 용 노 동 청 강 원 지 청 장



1. 건 명 :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신청에 따른 부지급 결정 및 취업지원 종료 통지서 공시송달
2. 근 거 :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, 행정절차법 제 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| 성명 | 생년월일 | 주소 | 서류의 명칭 | 서류의 주요내용 | 송달 불능 사유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----------|
| 방0빈 | 1992.2.18 |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(이하 생략) |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신청에 따른 부지급 결정 및 취업지원 종료 통지 | ○구직촉진수당 미신청에 따른 지급 중단 횟수 3회 이상시 중단 ○중단일 기준 3년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| 폐문 부재 |

4. 공고기간: 2021. 6.11. ~ 6.25.(15일간)

5.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 춘천고용센터 장희정(tel. 033-250-195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